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행복한 동행 창업진흥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업무협약서

창업진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창업 활성화와 우수 자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업무협약 체결기관간 창업 활성화와 우수 자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상호 지원 및 협력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분야)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1. 창업 활성화와 우수 자활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보유한 창업정보, 자원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2. 온·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기타 업무협약 체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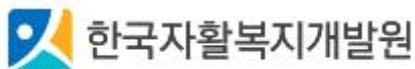
제6조(업무협약 개정 및 해지)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업무 협약에 대한 합의 개정 또는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단,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여, 협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협약 체결기관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추가 협조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및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한다.

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1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이병학

이병학



창업진흥원장

김광현

김광현